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『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』시행계획 공고

2025년도 『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』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 2025년 2월 21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민·관 협력형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
- □ 사업예산
- 60백만원
 - * 예산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□ 사업내용
-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활성화를 위하여, 민·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(기술료 5백만원 이상)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 건에 대해 "혁신중개 촉진 지원금" 지급

[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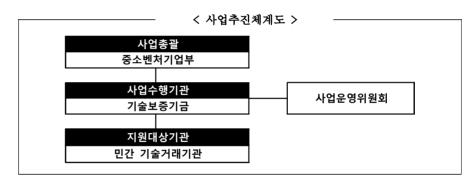
(단위: 백만원)

기술료	5 이상~ 15 미만	15 이상~ 30 미만	30 이상~ 50 미만	50 이상~ 70 미만	70 이상~ 100 미만	100 이상
지원금	0.3	0.8	1.6	2.4	3.4	4.0

2 추진근거 및 체계

- 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- (법(법령))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및 동법 시행령
- 。(요령(고시)) 중소기업 기술거래·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
- (관리지침)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

□ 추진체계



- · (사업총괄)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(중소벤처기업부)
- (사업수행기관) 사업공고 및 운영, 지원대상 선정*, 사업비 집행, 사업성과 관리 등 (기술보증기금, 이하 "기보")
 - * (사업운영위원회)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- (지원대상기관) 기보와 "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 협약"을 체결한 **민간 기술거래기관***
 - *「기술이전법」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,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

3 추진절차 및 지원내용

□ 추진절차

① 사업공고		
기보 홈페이지,	1	
스마트 테크브릿지 등		
기보		

	② 신청·접수	1
	사업신청서 및	1
>	계약자료 등 제출	
	민간기술거래기관	

	③ 지원금 심의
	사업운영위원회의
√	지원금 심의
	기보

	④ 지원금 지급
_	사업기간 내
~	2회 지원금 지급
	기보

□ 신청기관

• 기보와 "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"을 체결하고 공동중개를 추진한 **민가기술거래기관**

□ 지원대상

-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 5백만원 이상(부가세 제외)의 기술이전 계약 건 중, 기보와의 민·관 공동중개를 통해 계약체결되어 사업운영기간 내*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**된 건
 - * 사업운영기간: '25.1.1.~'25.11.13.
 - ** 사업운영기간 경과이후,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(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시 지급대상 제외건의 지원금 지급 여부 검토 예정)

※ "민·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"이란? ■참고■

-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기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동중개를 추진하고,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중개활동 일지'를 입력하고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건
- * 경로: 스마트 테크브릿지(tb.kibo.or.kr) > 신청 및 공모 > 공동기술중개 > 위탁기술목록

□ 제외대상

- 민가기술거래기관이 수취한 증개수수료율이 4%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
- 신청기관이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[지원 제외요건]

- ① 휴·폐업 기업
-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
- ③ 제출서류 등이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
- ④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
□ 지원내용

• (지원방법) 신청 기술이전 계약 건의 기술료 구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원금 차등 지급

[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]

(단위: 백만원)

기술료	5 이상~ 15 미만	15 이상~ 30 미만	30 이상~ 50 미만	50 이상~ 70 미만	70 이상~ 100 미만	100 이상
지원금	0.3	0.8	1.6	2.4	3.4	4.0

- (지급시기) 지원금은 사업기간 내 2회('25.7월, 11월) 지급예정이며,
 1차 지급시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 종료 가능
- (안분지급) 지급대상 지원금 총액이 사업예산(60백만원) 초과 시, 기관별 지급 지원금 총액에 비례하여 안분지급 예정(천원미만 절사)

4 사업 운영기간 및 신청방법

□ 공고 및 신청기간

- · (공고기간) '25. 2. 21. (금) ~ '25. 11. 13. (목) (266일간)
- 신청기간

구분	사업 신청기간	지원금 지급시기(예정)
 1차	′25.6.2. ~ ′25.6.30.	′25.7월
2차	′25.10.13. ~ ′25.11.13.	′25.12월

□ 지워금 신청방법

- ※ 신청서류 사본 첨부하여 **①이메일 신청** 후, **②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** 차수별 <mark>접수 마감일(1차: '25.6.30., 2차: '25.11.13.)</mark>까지 <u>이메일 신청과</u> 등기우편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
- (이메일 신청) 신청서류 스캔파일(PDF)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
- ② (등기우편 제출)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

구 분	주 소
이메일	transfer@kibo.or.kr
기메르	[메일제목] 2025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신청 <i>_신청기관명</i>
등기우편	(우편번호 48400)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

□ 신청 서류

연번	서식명
	신청서(양식1) 및 기업·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양식2,3)
1	- 신청서, 기업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: 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: 양식 작성 후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하여 제출
2	사업자등록증명
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3	-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(완납)에 한함 - 지원금 지급예정일 기준, 유효기간 경과시 추가제출 필요(별도 안내 예정)
4	중개수수료 수취 증빙서류
4	- '중개수수료 입금확인내역' 등 제출(민간기술거래기관이 수취한 중개수수료 내역 확인용)
5	통장사본

- 각 회차 신청 마감일(1차: 6.30,, 2차: 11.28.)까지 "제출"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자료 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5 유의사항

- □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□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
- □ 지원금 지급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
- 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6 문의처

사업수행기관	전 화	이메일
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	051-606-7419 051-606-7396	transfer@kibo.or.kr

		< 첨부 양식 >
	1	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사업 신청서류	2	기업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(기업용)
20 111	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대표자용)

참고

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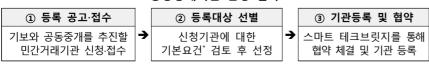
- □ (추진배경) 기술거래 수익공유를 통해 민간기술거래기관을 육성 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기술거래 시장환경 조성
- □ (사업개요) 기보의 **기술거래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**하고 **민간과 공동** 기술이전 중개를 추진하여 수익을 공유
- (기 보) 기술이전 수요발굴, 금융지원, 온라인 기술이전 플랫폼 (Smart Tech-Bridge)운영, 후속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제공
- <mark>(민간기술거래기관)</mark> 기보가 발굴한 기술이전 수요기술에 대한 **중개활동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**
- □ (업무절차) **수요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기보**가, **기술탐색・ 중개 활동은 민간이 수행**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 운영

<공동중개 업무 절차>

	기 보		민간기관		기보, 민간기관
	수요기술 발굴 및 중개 위탁	7	기술탐색 및 매칭	-	공동 기술이전 중개
_	기보, 민간기관, 수요·공급자	_	기보, 민간기관		기 보

- □ (공동중개기관) **산업통상자원부**가 지정한 **기술거래기관** 중 **민간 기관**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동중개기관으로 선정
- '24년말 기준 51개 기관을 선정하여 완료 하였으며, 향후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 예정

<공동중개기관 선정 절차>



* 산업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여부 및 기보의 보증금지 제한기업 여부 등

양식1

혁신증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

「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」 참여 신청서

접 :	수 번 호		접 수 일 시	
	기 관 명		대 표 자 명	
	사업자등록번호		법인(주민)등록반호	
신 기 관	연 락 처		이 메 일	
\ / \underset	본사 주소		•	
	업 종 분 류		주 요 제 품	
r1r1-1	성 명		직 위	
담당자	전 화 번 호		이 메 일	
	이전기술명			
	산업재산권			
	등 록 번 호			
계 약	기술이전 형태	□ 소유권 이전 □	전용실시권 □ 통	상실시권 □ 기타()
내용*	기술보유자		유 형	□대학 □공공연 □중소기업
	기 술 인 수 자	(신청기업)	계 약 일 자	20 . XX. XX.
	기 술 료	(원)	중 개 수 수 료	(원)
	기술혁신센터		기보 담당자	

* 신청계약건이 다수일 경우 "계약내용" 표 추가하여 작성 요망

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「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」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

기술보증기금 귀하

(인)

※ 유의사항 :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※ 별첨서류 : [공 통] 1.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<별첨1-1. 1-2>

2. 기술이전 중개활동 추진내용 보고서<별첨2>

양식2

기업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(기업용)

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기술보증기금(이하 '기보') 귀중

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 본 사업의 운영·관리, 신청기업 확인,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,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·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
	본 사업 관련 업무(선정평가, 운영, 사후관리 등 포함)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
보유 및 이용기간	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'선정 결과 통보 시점',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'사업 종료 시점'을 말합니다.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·이용됩니다.
거부 권리 및 불이익	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위 기업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"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·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수집항목	 기업일반현황: 기업명, 대표자명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, 담당자 정보, 기타 지원 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에 기제된 정보
	위 기업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□동의하지 않음 □동의함

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(필수사항)

제공받는 자	- 기타 정책수립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		
제공받는 자의 -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- 성과분석, 실적분석, 정책수립, 만족도 조사 등			
	본 사업 관련 업무(선정평가, 운영, 사후관리 등 포함)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		
보유 및 이용기간	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'선정 결과 통보 시점',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'사업 종료 시점'을 말합니다.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 한 목적으로만 보유·이용됩니다.		
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보 및 '제공받는 자'가 운영하는 본 사업 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			
제공항목	기업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		
기보가 위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고, 제공받는 자가 수집·활용하 □ 동의하지 않음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 동의함			



원

기 업 체 명 :

대 표 자 :
또는 대표이사 : (서명)
사 업 자 번 호 :
또는 법인번호 :
연 락 처 :

-9-

양식: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(대표자용)

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

기술보증기금(이하 '기보') 귀중

귀 기관과의 20 자 「혁신증개 촉진 지원사업」(이하 '본 사업')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 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1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	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·기술지도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본 사업의 운영·관리, 신청기업 확인,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,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·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
	본 사업 관련 업무(선정평가, 운영, 사후관리 등 포함)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 이용
보유 및 이용기간	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'선정 결과 통보 시점',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'사업 종료 시점'을 말합니다.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·이용됩니다.
거부 권리 및 불이익	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"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·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수집·이용 항목

고유식별정보	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				
♥ 五十十 5 3 도	위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□ 동의하지 않음	□ 동의함		
≗개인정보					
L ⊇ 일반개인정보	성명, 주소, 전화번호·Fax번호·E-mail주소 등 연락처 등	÷			
	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□ 동의하지 않음	□ 동의함		

- ※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업무가 종료되어 개인정보가 보안조치된 경우 해제하여 수집·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
- ※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도 수집·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* 기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녀 웍

본	인	성	명	:	(서명
주	긴등	록변	호	:	_
연	Ē	4	처	:	